

## 오믹스 기반 바이오헬스 식품산업 융합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2021.02.01. 제정

###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에 의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오믹스 기반 바이오헬스 식품산업 융합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이라 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사업구분 및 기간)

- ① 본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중 미래인재 양성사업 유형이다.
- ②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이며,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다.
- ③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다.

### 제 3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5.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규정

### 제2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제 4조 (교육연구팀 구성)** 교육연구팀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의 기준 요건에 준하여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교육연구팀 구성원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제 5조 (교육연구팀의 장)

-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선정된 교육연구팀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 4단계 BK21 오믹스 기반 바이오헬스 식품산업 융합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2021. 02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오믹스 기반 바이오헬스 식품산업 융합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5.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포함 참여교수 3명으로 이루어진다.)

## 6.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인사 및 예산 집행

③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교육연구팀은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팀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6조 (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고려대학교 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소속이어야 한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팀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없다.

**제 7조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팀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팀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창업을 한 사람(단,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팀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 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 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때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 9조 (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팀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규정 제 7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팀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 10조 (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 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성과(논문게재실적, 특허 등), 응용/개선력(과제운영, 업무지원 등), 참여도/적극성(학술대회 논문발표, 교육연구팀 자체 세미나 발표 등) 기타(대내·외 활동 등)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 11조 (신진연구인력)

-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려대학교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월 급여액 276.9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제 12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

팀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제 3 장 교육연구팀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제 13조 (사업비 지출항목)

-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4. 교육과정 개발비
  5.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6. 국제화 경비
  7. 교육연구팀 운영비
  8. 성과급
  9. 간접비
-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계획에 따라「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별표 3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 ③ 교육연구팀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 제 14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월별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박사수로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 의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③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5조 (인건비)

① 사업비는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될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300만원(월 급여액 276.9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 16조 (교육과정 개발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 17조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학회 참가 시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와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제한되며,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 제 18조 (국제화 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교육연구팀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 제 19조 (교육연구팀 운영비)

①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000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 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 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별표 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팀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으며, 교육연구팀 운영비는 교육연구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팀 운영비에서 성과급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 20조(성과급)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연구성과(논문게재실적, 특허 등), 응용/개선력(과제운영, 업무지원 등), 참여도/적극성(학술대회 논문발표, 교육연구팀 자체 세미나 발표 등) 기타(대내·외 활동 등)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

②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도 제1항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급한다.

**제 21조 (간접비)** 대학은 각 교육연구팀별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 22조 (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 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교육연구팀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자료는 대학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사업의 시작 일인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은『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등 상위 규정을 적용한다.
3.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지표에 의거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산정한다. (별첨 1, 2 참고)

